

제17조 (보칙) 기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81년 4월 10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88년 11월 16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1992년 11월 11일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【 13 】 휴회의건

제의년월일 : 1993. 11. 6

제 의 자 : 의 장

주 문

1993년도 행정사무감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함.

제안이유

감사특위 운영을 위하여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 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함.

【 14 】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12

제 출 자 : 행감특위원장

제안이유

1993년도 정기회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감사 특위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별첨 특위안을 제출함.

주요골자

- 감사기간 : 93. 11. 29 - 12. 1 (3일간)
- 감사대상 : 군본청 각 실과소 및 사업소, 읍면
- 감사반 편성
 - └ 감사위원 : 7인
 - └ 보조위원 : 3인
- 감사장소 : 본회의장 및 현장
- 감사방법 : 자료제출요구, 질의·답변, 현지확인

【 15 】 백석도시계획변경(재정비)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

제출년월일 : 1993. 11. 6

제출자 : 양주군수

제안이유

경기도고시 제440 ('74.12.16)호로 결정되고 경기도고시 제569 ('78.12.21)호로 지적 고시된 백석면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(재정비) 결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1. 도시계획 변경(재정비) 사항

- 위치 :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, 오산리 일부
- 면적 : 3.05km² (기존 도시계획구역)

2. 용도지역변경 (재정비) 조서